

GENERAL ORDER



Title: 물리력 사용 조사(Use of Force Investigations)

No: GO-PER-901.08

DISTRICT OF COLUMBIA

I.	Background	Page	1
II.	Policy	Page	2
III.	Definitions	Page	2
IV.	Regulations	Page	4
V.	Procedures	Page	8
V.A	Members Involved in a Use of Force Incident	Page	8
V.B	Notification and Reporting of Use of Force Incidents	Page	8
V.C	Initiating Use of Force Investigations	Page	9
V.D	Investigation of Use of Force Incidents within the District of Columbia	Page	9
V.E	Use of Force Incidents Outside of the District of Columbia	Page	13
V.F	Use of Force Incidents Indicating Potential Criminal Conduct	Page	14
V.G	In-Custody Deaths	Page	14
V.H	Determination of Duty Status of Involved Members	Page	14
V.I	Internal Affairs Division Investigations	Page	14
V.J	Final Use of Force Investigative Report Contents	Page	16
VI.	Roles and Responsibilities	Page	17
VII.	Cross References	Page	19

I. 배경(Background)

MPD를 감독하고 직원의 훈련을 위해서 물리력 사용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보고가 필수적이다. 물리력 사용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후속 수사는, 물리력 사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 적합성과 완전성면에서 MPD 및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여주고, 물리력 사용 사건에 대한 MPD의 결정 능력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적절한 수준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능력도 향상시킨다.

II. 정책(Policy)

MPD 정책은 특히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항상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MPD 경찰은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찰이

사건이나 사람을 효과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면서 경찰 및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 폭력 상황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을 위해, 또는 자신이나 사람에게 직면한 위협에 비례하는 물리력 사용을 위해, 위협 상황을 계속 재평가하면서 그에 맞는 물리력을 최종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물리력 사용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의 물리력 사용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하는 것이 MPD 정책이다.

III. 정의(Definitions)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지정된 의미를 갖는다:

1.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 총기(firearm)를 사용하거나 둔기(a hard object)로 머리를 강타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부상을 일으키는 모든 물리력
2. 직무 자격(Duty Status) - MPD가 경찰관에게 허가한 권한으로 경찰의 전 직무 범위에 관여할 능력 및 허가를 지정한 것
3. 덜 치명적인 무기(Less lethal weapon) - 사망을 유발하지 않고 물리력 대상자의 위협을 무효화할 의도나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물건 또는 장치(예: 고무 총탄(rubber bullets), 올레오레신 고추 스프레이(OC spray), 전기충격기(ECD, electronic control devices), 경찰봉(tactical batons))
4. 직원(Member) - MPD 경찰관 또는 행정관 및 MPD 자율방범대(MPD Reserve corps)
5. 객관적 타당성(Objective reasonableness) - 특정 물리력 사용의 타당성 기준은 현장 경찰관이 처해 있는 상황과 사실에 비추어 그/그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6.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 물리력 사용 사건이 발생해 행정 조사를 하는 경우 증거의 기준
7.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 -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주의 깊은 경찰이 범죄가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것이며 그리고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게 하는 일련의 사실, 상황 또는 신뢰할 만한 정보
8. 심각한 신체 상해(Serious physical injury) - 병원 입원, 사망을 일으킬 상당한 위험성, 심각한 신체 손상, 의식 불명, 장애, 골절, 또는 신체나 장기 일부분의 손상 및 장기적인 유실을 일으키는 상해 및 질병

참조: 병원 입원은 물리력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물리력 사용 이전 (예, 마약이나 알코올, 고혈압 같은 질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치료나 병원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심각한 물리력(Serious use of force) - MPD 경찰의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한다.

- a. 사격 훈련장 및 동물에게 행하는 발사를 제외한 모든 총기 발사
- b. 심각한 신체 부상을 일으키는 물리력
- c. 경찰 장구(경찰봉, 나이트스틱)로 머리 강타
- d. 의식 불명, 사망위험, 심각한 신체손상, 신체 또는 장기 기능 일부의 장애 또는 상해를 일으키는 모든 물리력;
- e. MPD 경찰견이 사람을 무는 것;
- f. 물리력 대상자의 호흡을 제한하기 위해 목을 누르는 구속 장치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모든 물리력
- g.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물리력

10. 물리력(Use of force) - 경찰의 명령에 따르도록 물리력 대상자를 설득하는데 이용하는 모든 물리적 강요

a. 다음의 행위는 보고 의무가 있는 물리력(reportable uses of force)에 해당 하며 PD Form 901e(물리력 사용 사건 보고서, Use of Force Incident Report(UFIR))를 작성해야 한다:

- (1)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 (2) 심각한 물리력
- (3) 덜 치명적인 무기의 사용(Use of a less-than-lethal weapon)
- (4) 잠재적 범죄 행위(criminal conduct)에 해당하는 모든 물리력
- (5) 물리력 대상자가 경찰의 물리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상 또는 통증을 제기하는 경우

b. 다음의 행위는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 부상이나 통증이 발생하지 않지만 보고 의무가 있는 물리력(reportable uses of force)에 해당 하며 PD Form 901g(보고 의무가

있는 사건 양식, Reportable Incident Form(RIF))를 작성해야 한다:

- (1) 경찰 혼자 또는 팀으로 하는 기습제압으로 부상이나 통증 호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2) 기타 다른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채, 사람 또는 그 방향으로 총을 빼서 겨누는 행위

참조: GO-RAR-901.07(물리력 사용, Use of Force)에 따라, 수갑 착용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부상이나 가벼운 통증 자체는 보고 의무가 있는 물리력 사용 또는 보고 의무가 있는 물리력 사용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잠재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물리력 사용(Use of force indicating potential criminal conduct by a member) - 예를 들어, 수갑 찬 물리력 대상자를 때리기, 구타, 걷어차기 또는 기타 유사한 행위가 해당한다. 또한 물리력 대상자가 경찰의 잠재적 범죄행위 또는 다른 심각한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정보를 가지고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대해 불만 제기 및 고소 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찰이 해당 경찰이 사용한 물리력 상황을 판단해볼 때 자신이 사용하는 물리력 수준을 명백히 넘어서거나 또는 해당 물리력 사용이 범죄 행위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해당 한다.

IV. 규정(Regulations)

A. 조사 책임(Investigative Responsibilities)

1. 물리력 사용에 대한 조사는 이 훈령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내사과(Internal Affairs Division(IAD)), 범죄조사부(Criminal Investigations Division(CID)), 보안경찰 관리국(Security Officers Management Branch(SOMB)), 또는 해당 지휘부(chain of command official)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2. 내사과(IAD, Internal Affairs Division)¹⁾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사건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
 - a. 이 훈령 PartIII에서 기술한 대로, 치명적인 물리력, 심각한 물리력, 또는 잠재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건
 - b. 동물 및 사격 훈련장에서의 총기 발사를 제외하고, 다음 기관의 경찰이 장소와 상관없이 행한 모든 총기 발사(총기에는 직무용 pistol, 허가된 비상용 권총(off-duty pistol), 직무용 shotgun, 직무용 rifle이 해당함):

(1) MPD

1) <https://mpdc.dc.gov/page/internal-affairs-bureau>. 내사과(IAD, Internal Affairs Division)는 MPD 내사국(IAB, Internal Affairs Bureau)의 하부 조직으로서 Police misconduct section과 OPC(office of police complaints) Liaison unit으로 구성되어 있다. IAD는 MPD 직원의 치명적이며 심각한 물리력 사용 사건을 조사한다.

- (2) DC 주택청 경찰(District of Columbia Housing Authority Police);
 - (3) DC 소방 및 응급 의료 서비스 부서 내 방화 조사팀(District of Columbia Fir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Department's Arson Investigation Unit)의 무장 경찰; 그리고
 - (4) DC 감찰관 사무소(District of Columbia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의 무장 경찰
- c. 미국 공원 경찰(USPP, United States Park Police)의 비치명적인 총기발사 및 비치명적인 물리력 사용을 제외하고, 근무중인 DC 경찰관이 주법에 따라 치명적이고 비치명적인 총기발사를 행한 경우.
- (1) MPD 내사과(MPD IAD)는 미국 공원 경찰(USPP)이 행한 모든 치명적인 총기발사 및 치명적인 물리력 사용을 수사해야 한다.
 - (2) 미국 공원 경찰(USPP)의 비치명적인 총기발사와 비치명적인 물리력 조사는 해당 공원경찰청(USPP)이 담당한다.
- d. 임무 수행중인 특수경찰관 및 장갑차 경비경찰(armored car guards)이 DC 내에서 치명적인 물리력 사건을 발생시킨 경우
- 참조: 특수경찰관이 관여된 비치명적인 물리력 사건이 '보안 경찰 관리국'(SOMB, Security Officers Management Branch)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경우 '보안 경찰 관리국'(SOMB)이 이를 수사한다.
- e. DC 내 경찰기관의 경찰이 물리력 대상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물리력 사건의 경우
 - f. 물리력 대상자가 MPD 경찰의 보호(in the custody)를 받는 중에 또는 제압 중 사망한 경우, 또는 MPD가 관리하는 구금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사망하는 경우
 - g. MPD의 차량추적으로 사망한 경우
 - h. 경찰이 증거물로 회수한 무기를 취급하는 동안 과실로 총기를 발사한 경우
 - i. 동물 및 사격 훈련장에서의 총기발사 이외에, 전기충격기(ECD, electronic control devices) 및 총기류(extended impact weapons)와 관련된 모든 물리력 사용 사건을 최종 수사하는 경우

- j. MPD 경찰견이 물리력 대상자를 문 경우 및 물렸다고 주장(allegation)하는 경우
- k. 물리력 대상자의 증거가 없는 주장 또는 부상이 없는 주장(allegation)을 제외하고, 경찰이 경찰장비(경찰봉, 나이트스틱) 또는 기타 다른 물건으로 물리력 대상자의 머리를 타격 한 것을 MPD가 확인한 경우
- l. MPD 경찰에게 제기된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대한 불만사항을 내사국(IAB, Internal Affairs Bureau)²⁾이 확인한 결과, 잠재적 범죄 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
 - (1) 해당 경찰이 사용한 물리력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찰이 판단해볼 때 자신의 물리력 수준을 명백히 넘어서거나 또는 해당 물리력 사용이 범죄 행위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 (2) 경찰의 수색이 사람의 시민권을 심각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이러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수색에 대한 불만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 Neighborhood Engagement Achieves Results Act of 2015 (D.C. Law 21-125; D.C. Official Code § 5-1107)에 따라 경찰관에게 접수된 모든 외부 불만사항을 경찰 고발관실(OPC, Office of Police Complaints)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 고발관실(OPC)은 MPD가 조사할지 또는 자신(OPC)이 조사 할지 결정해야 한다.

- m. 내사과(IAD, Internal Affairs Division)의 물리력 사용 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MPD의 이차적인 위법행위(misconduct).
- n. 경찰국장(Chief of Police)이나 내사국(IAB)의 Assistant Chief가 지휘하는 기타 다른 조사의 경우.
- 3. 범죄조사부(CID, Criminal Investigations Division)는 DC내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다:
 - a. Part IV.A.2에서 기술한 사건을 제외하고, H.R.218(법 집행관 안전법, Law Enforcement Officers Safety Act(Title 18 U.S. Code, Section 926))에 따라, ‘은닉 무기’(concealed weapon) 소지를 허가받은 퇴직한 MPD 경찰 또는 DC밖 법 집행관(현역에 있거나 은퇴했거나)이 행한 모든 총기 발사

2) <https://mpdc.dc.gov/page/internal-affairs-bureau>. MPD의 반부패 프로그램을 책임지며 유지 시행하고 있다. 직원의 부정 행위와 부패에 대한 조사. IAB(internal Affairs Bureau)의 하부 조직으로는 IAD(Internal Affairs Division), Internal Compliance Division, Court Liaison Division, EEO Investigation Division이 있다.

- b. 자살수단과 관계없이 MPD 직원이 자살한 경우; 그리고
 - c. Part IV.A.2.b에서 기술한 법집행 기관의 경찰이 허가받지 않은 개인 소유 총기를 DC내에서 주법(Color of law)에 따르지 않고 비번 시에 발사한 경우.
4. 보안 경찰 관리 지서(SOMB, Security Officers Management Branch)는 자신의 권한 하에 있는 특수 경찰관과 관계된 비치명적인 물리력 사용 사건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

참조: ‘보안 경찰 관리지서(SOMB, Security Officers Management Branch)는 민간 경비 업체를 규제하거나 조사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연방정부청사 경비대 또는 장갑차 경비대(armored car guards)와 같은 민간 계약자들이다.

5. 사건에 연루된 경찰의 소속 지휘부(chain of command)는 해당 경찰과 관련된 다음의 사건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
- a. 내사과(IAD), 범죄조사부(CID), 또는 보안경찰 관리지서(SOMB)가 수사하지 않은, 보고의무가 있는 모든 물리력 사용 사건
 - b. 사격 훈련장 및 훈련 시에 발생한 총기 발사
 - c. 동물에게 향한 총기발사
 - d. 모든 전기충격기(ECDs, electronic control devices) 및 총기류(extended impact weapon) 사용에 대한 예비조사

- B. 물리력 사용과 관련이 있는 상관(supervisor)은 수사할 책임이 없다.
- C. 해당 경찰관의 지휘부(chain of command)가 조사하는 경우, 지휘관(the commanding official)은 자신이 해당 경찰관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는 경우 조사 책임을 다른 명령 체계 지휘부에 위임할 수 있다.
- D. 범죄수사(criminal investigation)에서 심사(review)의 기준은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이며, 행정수사의 심사 기준은 증거의 우세함(preponderance)이다.
- E. 내사과(IAD, Internal Affairs Division)는 모든 물리력 사용과 관련한 사건 조사를 맡을 권리와 권한이 있다.
- F. 조사 담당관(investigating officials)은 조사의 유형(예, 내사과(IAD)가 조사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 소속 지휘부가 조사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GO-SPT-302.13(신체착용 카메라 프로그램, Body-Worm Camera Program)에 따라, 조사 시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의 신체 착용 카메라(BWC, body-worn camera) 기록 및 서류조사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G. MPD 행정관이 직무 수행 중 물리력 사용을 한 경우, 즉시 소속 부서(element)의 근무 중 담당관(official)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건을 MPD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H. MPD의 물리력 사용 심사 위원회는 GO-RAR-901.09(물리력 심사 위원회, Use of Force Review Board)에 따라 모든 물리력 사용 사건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I. 이 훈령은 MPD와 경찰공제조합(Fraternal Order of Police)간의 노사단체 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을 대체하지 않는다.

V. 절차(Procedures)

A. 물리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행해야 하는 절차

1. GO-RAR-901.07(물리력 사용, Use of Force)에 따라,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할 때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물리력 대상자가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육안으로 그리고 구두로 체크한다.

b. 물리력 대상자가 부상, 통증 호소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GO-PCA-502.07(수감자 치료 및 입원, Medical Treatment and Hospitalization of Prisoners)에 따라 즉시 의료 지원팀에게 연락한다.

c. 상황이 안전해지면 즉시 응급조치를 수행한다.

B. 물리력 사건의 통보 및 보고

1. GO-RAR-901.07(Use of Force)에 따라, 경찰은 동료가 과도한 물리력 및 위법행위(misconduct)에 해당하는 물리력 사용 시, 사건에 개입하고 이후 보고해야 한다.

2. 이 훈령의 Part III.10.a에서 정의한, 보고 의무가 있는 물리력 사용(reportable use of force) 사건 후, 경찰은 즉시 상관(supervisor)에게 통보하고 SO-10-14(물리력 사건 작성 지침 보고서,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Use of Force Incident Report(UFIR: PD Forms 901-e and 901-f)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3. 이 훈령의 Part III.10.b에서 정의한 “보고 의무가 있는 물리력 사건(reportable

force incident)” 후, 경찰은 SO-06-06(보고 의무가 있는 물리력 사건 작성 지침,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Reportable Incident Form(RIF: PD Form 901-g and 901-h)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C. 물리력 사용 수사의 착수

1. 사건을 보고하는 경찰관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상관(supervisor)은 모든 물리력 사건(예, 보고의무가 있는 물리력 사용 및 보고 의무가 있는 물리력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

a. 상관(supervisor)은 Part IV.A에 따라 필요시 어느 기관(예, IAD, CID, SOMB 또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부서)이 조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지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b. Watch commanders는 심각한 물리력, 잠재적 범죄 행위를 나타내는 모든 물리력, 전기충격기(ECD) 및 총기류(extended impact weapon)를 사용한 모든 현장에 대응해야 한다.

(1) 전기충격기(ECD) 및 총기류(extended impact weapon)를 사용한 경우, 근무가 종료되기 전에, watch commanders는 사건을 요약해 번호를 매기고 증빙서류(예, 체포 보고서(Arrest Report), 사건 보고서(Incident Report))와 함께, 작성된 PD Form 901b(예비보고 양식-물리력 사건, Preliminary Report Form-Use of Force Incidents)를 iad.adminbox@dc.gov에게 전자 우편으로 보내는데, cc(참조)에 해당 경찰 소속 지휘관(command official) 및 행정 관리자(the official's administrative captain)를 포함시켜 송부한다.

(2) 내사과(IAD)는 전기충격기(ECD) 및 총기류(extended impact weapon)를 사용한 모든 사건에 대해 최종 수사할 책임이 있다.

c. District watch commanders 또는 해당 경찰 소속 상관(element supervisor)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사무소(OUC, the Office of Unified Communications) 및 지휘정보 체계(CIC, Command Information Center)에 보고의무가 있는 모든 물리력 사건을 통보해야 한다.

D. DC내에서 발생한 물리력 사용 사건 수사

1. 물리력 사건과 관련 있는 경찰의 권리

a. 치명적인 물리력, 심각한 물리력, 또는 잠재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물리력을 사용한 해당 경찰은, 다음 사항 중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사건에 대해 진술(비디오 또는 오디오 인터뷰를 포함해)하도록 강요 받아서는 안 된다.

(1) 검찰청(USAO, 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에서 서면 기각(a written declination)을 할 때까지, 또는

(2) 소속 watch commander가 대기 중(on-call)인 IAD 관리자(경위 이상)로부터 garrity warning³⁾ 박탈을 승인 받을 때까지

b. 총기발사를 제외하고, GO-SPT-302.13(Body-Worn Camera Program)에 따라, 경찰은 진술하기 전에 자신의 '신체착용 카메라'로 물리력 사용 사건을 볼 수 있도록 허용 받아야 한다. Body-Worn Camera Program Amendment Act of 2015에 따라, 총격 사건에 관여한 경찰은 자신의 신체착용 카메라(BWC) 기록 또는 다른 경찰의 기록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c. 치명적인 물리력, 심각한 물리력, 또는 잠재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물리력의 경우, 사건 진술 전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다.

2. 치명적인 물리력, 심각한 물리력, 또는 잠재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물리력 사용에 대한 대응

a. 사건을 통보받은 상관(supervisor)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사건 현장이 유지되고 보존 되도록 한다.

(2) 목격자 탐문 수사를 한다

(3) 필요한 경우, 수사를 진행 중인 내사과(IAD) 직원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b. 심각한 물리력을 사용한 사건 현장의 경우, watch commander는 다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1) 물리력 사용 사건에 관련이 있거나 목격한 모든 경찰은 현장이 확보되는 즉시 자신들의 신체착용 카메라(BWC)를 정지시킨다

(2) 신체착용 카메라(BWC) 및 MPD 소유 핸드폰을 내사과(IAD)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3) https://en.wikipedia.org/wiki/Garrity_warning. Garrity 경고는 일반적으로 주 또는 지방 조사가 내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권리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사건 진술에 대한 형사 및 행정 책임도 조언한다. 또한 범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킬 권리도 조언한다. 미국 대법원이 Garrity v. New Jersey (1967) 사건에서 공포했다. 여기에서 경찰은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으며 그렇지 않으면 해고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강요받았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수정 헌법 제5 조 침묵 할 권리를 박탈 당했다고 판결했다.

- (3) 경찰이 부상을 입어 의료 진료를 위해 사건 현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 신체착용 카메라(BWC) 및 MPD 소유 핸드폰을 이 훈령에 따라 반납하고 처리해야 한다.
3. ‘치명적인 물리력’, ‘심각한 물리력’, 또는 ‘잠재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물리력 사용’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 a. 내사과(Internal Affairs Division(IAD)), 범죄 조사부(Criminal Investigations Division(CID)), 보안경찰 관리국(Security Officers Management Branch(SOMB))에서 조사하지 않은 ‘보고 의무가 있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의 경우,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부서(the involved member's chain of command)가 조사해야 한다.
- b. 해당 경찰관의 소속 부서가 ‘보고 의무가 있는 물리력 사용’을 조사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 통보 받은 상관(supervisor)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1) Watch commander에게 통보한다.
 - (2) 기타 관련 조사기관(예, CID, IAD, or SOMB)에 통보하고 초동 수사를 진행한다.
 - (3) 교대근무(shift)가 끝나기 전에 ‘직원 성과 관리 시스템’(PPMS, Personne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에 로그인해 사건 요약(IS, incident summary) 번호를 신청한다.
 - (4) 해당경찰에게 SO-10-14(물리력 사건 보고서 작성 지침,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Use of Force Incident Report)에 따라 PD Form 901-e 을 작성하고, SO-06-06(물리력 사건 양식 작성 지침,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Reportable Incident Form)에 따라 PD Form 901-e 및 기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다.
 - (5) 모든 초기 서류를 취합해 watch commander에게 전달한다.
 - (6) 물리력 대상자의 사진을 찍고 인터뷰한다.
 - (7) 해당 경찰관 및 물리력 대상자가 입은 부상 사진을 문서화 한다.
- c. Watch commanders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1) 사건을 처음 통보받은 상관(supervisor)으로부터 모든 초기 서류를

받아 예비 조사를 수행한다.

(2) 해당하는 경우, SO-12-18(예비 보고서, Preliminary Reports)에 따라 PD Form 901-b(예비 보고서 양식, Preliminary Report Form)를 작성해, 해당 경찰관의 소속 부서장 및 부서장의 행정 캡틴(administrative captain)에게 송부한다.

(3) PD Form 901-b, 901-e 및 기타 관련 문서의 사본을 PD Form 150(교대근무 부서장 보고서, Tour of Duty Supervisor's Report)에 첨부한다.

4. 물리력 사용 사건과 관련 있는 고소인, 경찰 및 목격자의 인터뷰

a. 물리력 사건 조사를 수행할 때, 조사관은 다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1) 실행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고소인 및 목격자에게 편리한 장소 및 시간으로 면담을 해야 한다(예, 거주지 또는 직장)

(2) 내사과(IAD)의 직원 및 관련 지휘부가 사건 관련자들을 면담하기 전까지 격리 조치해야 한다.

(3) 경찰 포함 모든 고소인 및 목격자를 각각 분리해서 면담 한다.

(4) 가능한 최대로 유도심문을 피해야 한다.

(5) 해당 경찰의 상관(supervisor)에게 통보해야 한다.

(6) 상관(supervisor)을 포함해 해당되는 모든 MPD 경찰을 면담해야 한다.

(7) 관련 있는 모든 증거를 보존하고, 문서화하며 분석한다. 또한 목격자를 찾기 위한 현장 조사 및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의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8) 조사 중 취합된 경찰, 고소인 및 목격자 면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로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5. 중대한 물리력 사용 사건으로 이어진 범죄의 조사

a. 범죄조사부(CID) 관리자(official)는 적용 가능한 경우, 중대한 물리력 사용으로 이어진 범죄에 대해 선임 조사관(a lead investigator)을 임명해야 한다.

- b. 범죄조사부(CID)는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된 증거, 증인 및 기타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 c. 범죄조사부(CID)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경찰의 체포 및 처리를 담당한다.
- d. 법의학(DFS, Department of Forensic Science)/범죄 현장 수사부(CSID, Crime Scene Investigations Division) 소속 직원은 증거를 구성하는 범죄 현장 처리과정에 대응하고 책임을 진다.
- e. 수사 기간 동안 사건현장을 담당하는 법의학(DFS)/범죄현장 수사부(CSID)의 증거 분석관은 증거를 구성하는 모든 정보를 내사과(IAD)와 공유해야 한다.

E. DC 밖에서 발생한 물리력 사용 사건 수사

1. 직무 중 또는 비번 여부에 관계없이, 경찰이 DC 밖에서 치명적인 물리력, 심각한 물리력, 또는 잠재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물리력에 관련된 경우:
 - a. 경찰은 즉시 지휘정보센터(CIC, Command Information Center)를 통해 소속 부서의 watch commander에게 통보해야 한다.
 - b.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watch commander는 지휘정보센터(CIC)를 통해 내사과(IAD)에 통보해야 한다.
 - c. 내사과(IAD) 조사관은 즉시 범죄현장에 대응해야 한다.
 - d. 해당 사건이 발생한 관할권은 범죄 조사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닌다.
 - e. 동시에, 내사과(IAD)는 행정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 관할권의 조사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2. 직무 중 또는 비번 여부에 관계없이, 경찰이 DC 밖에서 치명적인 물리력, 심각한 물리력, 또는 잠재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물리력 이외의 물리력에 관계된 경우:
 - a. 경찰은 이 훈령의 Part V.E.1에 따라 필요한 통보를 해야 한다.
 - b.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부서의 관리자(official)는 사건 현장에 대응해야 한다.
 - c. 그러한 경우, 사건이 발생한 관할권의 법집행 당국은 모든 범죄 조사를 처리할 것이다.
 - d. 내사과(IAD)는 이 경우에만 정책 검토를 해야 한다.

F. 잠재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물리력 사용 사건

1. 내사과(IAD)는 심각한 물리력, 치명적인 물리력, 잠재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물리력 및 MPD 경찰의 보호하에 있던 물리력 대상자가 사망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USAO, 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과 상의해야 한다.
2. 검찰청(USAO, 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 또는 관련 기소 당국은 해당 사건에서 형사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형사상 잘못이 있다는 증거가 밝혀지면, 내사과(IAD)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검찰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검찰청(USAO) 또는 기타 해당 기소 기관 및 해당 경찰의 소속 부서(affected element) 또는 조사부서 간에 조정자 역할을 한다.
 - b. 다른 해당 법 집행기관의 연락 담당기관 역할을 한다.

G. 물리력 대상자가 경찰의 보호 중 사망(In-Custody Deaths)한 사건의 경우

1. 물리력 대상자가 경찰의 보호 중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면, 경찰의 초동대처는 먼저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고(해당하는 경우),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상관(supervisor)에게 통보한다.
2. 경찰 보호 중 사망한 경우 즉시 내사과(IAD) 및 범죄조사부(CID)에 보고해야 한다.
3. 경찰 보호 중 사망한 경우, 범죄조사부(CID,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는 사건 현장에 즉시 대응해야 하며 PD Form 120(사망 보고서, Death Report) 및 사건 보고서(Incident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4. 내사과(IAD)는 경찰 보호 중 사망한 사건을 검찰청(USAO)과 상의하고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H. 물리력 사건과 관련 있는 경찰관의 직무 결정(Determination of Duty Status of Involved Members)

물리력 사용 사건과 관련 있는 경찰관의 직무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GO-RAR-901.11(물리력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직무 결정, Force-Related Duty Status Determination)에 따라야 한다.

I. 내사과의 조사(Internal Affairs Division Investigations)

1. 내사과(IAD) 조사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전기충격기(ECD, electronic control devices) 및 총기류(extended impact weapon) 사용을 제외한, 물리력 사건 현장에 대응하고 조사할 책임이 있다.

참조: 내사과(IAD) 조사관은 전기충격기(ECD, electronic control devices) 및 총기류를 사용한 사건 현장에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이 훈령에 따라 최종조사를 완료할 책임이 있다.

- b. 사건 현장이 안전하다고 확인되는 즉시 watch commander는 물리력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목격된 경찰관의 신체 착용 카메라(BWC) 및 직무용 핸드폰을 수거하고 다음 사항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 (1) 사건과 관련된 녹음을 즉시 Evidence.com에 업로드한다;

- (2) 해당 녹음을 GO-SPT-302.13(신체 착용 카메라 프로그램, Body-Worn Camera Program)에 따라 라벨 작업을 하고 분류한다; 그리고

- (3) 신체 착용카메라 및 직무용 핸드폰을 해당 경찰관의 다음 교대 근무 전에 돌려주기 위해 해당 경찰관 소속 관리자(official)에게 넘겨준다.

- c. 물리력 사건과 관련 있는 고소인, 해당 경찰 및 증인을 면담 시, 이 훈령의 Part V.D.4에서 설명한 조항을 따른다.

- d. 해당 법률 및 MPD 훈령에 따라, 물리력 대상자, 해당 경찰 및 중요 증인의 면담을 오디오 또는 비디오로 기록한다. 물리력 대상자 또는 MPD 경찰이 아닌 증인이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록을 거부하면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인이 서명하도록 한다.

- e. 다음 사건의 경우, 녹음되거나 녹화된 모든 진술은 조사 파일에 기록되고 포함되어야 한다:

- (1) 치명적인 물리력;

- (2) 부상을 초래한 경찰의 총기 발사;

- (3) 확인된 위법행위(misconduct)가 심문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 물리력 대상자가 경찰의 보호 중 사망한 경우;

(5) 차량 추격이 사망을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6) 내사과(IAD)의 지휘관(commanding official)이 결정한 기타 모든 경우

f. 직무에서 배제되기 전에:

(1) 예비 보고서를 '내사국'(IAB, Internal Affairs Bureau)의 Assistant Chief에게 제출한다.

(2) 우발적 또는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총기 발사의 상황을 기술하는 문서를 경찰서장(chief of police)으로부터 승인받고 DC 시장에게 보낸다.

g. 물리력 사건 조사 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모든 경찰관의 체포를 담당한다.

h. 24시간 이내 또는 다음날 근무일 내에 검찰청(USAO, 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에 통보하고 상의한다.

i.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에도 조사 단서를 계속해서 찾고 검찰청 또는 관련 기소 당국과 협력한다.

j. 검찰청(USAO)으로부터 '기각'(a Letter of Declination) 통지를 받은 후 또는 형사 고발(문서화해야 하는 특수 상황이 없는 경우)이 끝난 후, 지정된 기한까지 결론과 권고 사항을 포함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J. 물리력사건 최종 조사 보고서 내용(Final Use of Force Investigative Report Contents)

1. 내사과(IAD)가 조사한 경우 및 소속 경찰관 지휘체통이 조사한 경우 둘 다, 최종 조사 보고서에는 사건에 대한 설명, 조사과정중에 확인된 또 다른 물리력 사용에 관한 내용, 관련 증거의 요약 및 분석, 조사 결과에 대한 제안 등을 기입해야 한다.

2. 조사 결과에 대한 제안에는 물리력 사용이 MPD 정책 및 훈련내용과 일치하는지, 적절한 전략이 사용되었는지 또한 사용된 물리력과 같은 수준의 다른 대체 전략이 합리적으로 가능했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물리력 사건에 대한 결과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해 분류되어야 한다:

a. 정당함, MPD 정책과 일치(Justified, Within Department Policy) - 물리력 사용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물리력 사용 중 해당 경찰은 MPD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

- b. 정당함, 그러나 MPD 정책 위반(Justified, Policy Violation) - 물리력 사용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지만, 물리력 사용 중 해당 경찰은 MPD 정책을 위반했다.
 - c. 정당함, 전략적 개선 사항 필요(Justified, Tactical Improvement Opportunity) - 물리력 사용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물리력 사용 중 해당 경찰은 MPD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결과 물리력 사용에 대해 전략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 d. 정당하지 않음, MPD 정책과 불일치(Not Justified, Not Within Department Policy) - 물리력 사용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물리력 사용 중 해당 경찰은 MPD 정책을 위반했다.
4. 과도한 물리력 사용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물리력 대상자의 주장(allegation)은 다음 결과중 하나에 의해 분류되어야 한다:
- a. 증거 미발견(Unfounded) - 그 사건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실이 없음
 - b. 증거 존재(Sustained) - 사건이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증거와 경찰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의 우세함에 의해 주장이 뒷받침 된다.
 - c. 증거 부족(Insufficient facts) - 주장된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결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d. 책임 없음(exonerated) - 증거의 우세함은 주장된 행위가 발생했음을 보여주지만, MPD 정책, 절차 및 훈련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VI. 역할 및 책임(Roles and Responsibilities)

A. Watch commanders는 다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 1. 지휘정보센터(CIC)를 통해 내사과(IAD)에 치명적인 물리력, 심각한 물리력, 잠재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물리력 사건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2. 보고 의무가 있는 모든 물리력 사용 및 보고 의무가 있는 물리력 사건은 서면으로 내사국(IAB)에 보고하고, 교대근무 종료 전에 사건 요약(incident summary) 번호를 매긴다.

B. 지휘관(Commanding officials)은 다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1. 소속 부서에서 물리력 사용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잘못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내사국(IAB, Internal Affairs Bureau)에 통보한다.
 2. 해당 경찰관과 관련해 적용가능한 모든 행정 후속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 업무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a. 필수 사건 보고서 작성;
 - b. 해당하는 경우 PD Form 77(경찰권 철회 통보, Notice of Revocation of Police Powers)을 작성하고 업데이트 하기;
 - c. 의료 서비스 부서의 지침 및 직원 지원 프로그램 후속조치(Employee Assistance Program follow-up)의 준수;
 - d. 해당하는 경우 PD Form 42(질병/상해 보고서) 인증 완료하기;
 - e. 해당하는 경우 PD Form 43(DC정부 자산피해 및 손실 보고서) 인증 완료하기;
 - f. 직무용 무기 교체(Service Weapon replacement);
 - g. (해당하는 경우) 부상자/체포된 자 처리하기;
 - h. 신변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제공
- C. DC 경찰 아카데미(Metropolitan Police Academy)의 지휘관(Commanding Official)은 다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1. 반년 주기로 물리력 사용에 관한 교육을 모든 경찰관에게 실시한다.
 2. 손을 이용한 제어 전략 및 방어 전략에 관한 물리력 사용 교육을 2년마다 교도관(cell block technician)에게 실시한다.
- D. 최고정보 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의 MPD 사무소 국장(Director of the MPD Office)은 심각한 물리력 사용 사건과 관련된 모든 컴퓨터 관련 통신(예, MDC terminals)을 즉시 내사과(IAD)에 제공한다.
- E. 내사과(IAD)의 지휘관(Commanding Official)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부주의로 인한 총기 발사 또는 업무 중 총기 발사 상황을 기술한 문서를 시장(mayor)에게 송부 한다.
 2. 작성된 예비 조사 보고서 및 최종 조사 보고서를 MPD 기록 보관 일정에 따라

보관한다.

F. 내사국(IAB)의 차관(Assistant Chief)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보고된 모든 사건에 대해 사건 요약(Incident Summary) 번호가 매겨졌는지 확인한다.
2. 물리력 사건 관련 데이터가 '직원 성과 관리 시스템'(PPMS, Personne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에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3. 부주의로 인한 총기 발사 또는 업무 중 총기 발사, 심각한 물리력 사용, 또는 잠재적 범죄 행위를 나타내는 물리력 사용의 경우, 사건 발생 24시간 내에 예비 보고서를 경찰국장(Chief of Police)에게 송부한다.

G. 부주의로 인한 총기 발사 또는 업무 중 총기 발사, 심각한 물리력 사용, 또는 잠재적 범죄 행위를 나타내는 물리력 사용의 경우, 경찰국장(Chief of Police)은 DC 시장(mayor)에게 보고서를 전송하다.

H. 법의학(DFS, Department of Forensic Science)/범죄 현장 조사부(CSID, Crime Scene Investigations Division)는 보고서, 통신, 도표(diagram), 실험 결과(lab results) 및 물리력 사용 사건과 관련된 기타 정보의 모든 사본을 즉시 내사과(IAD)에 송부한다.

I. 통합 커뮤니케이션 사무소(OUC, the Office of Unified Communications)의 국장(Director)은 심각한 물리력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무선통신 테이프 사본을 내사과(IAD)에 제공한다.

VII. 상호 참조(Cross References)

- A. GO-PER-302.13(Body-Worn Camera Program)
- B. GO-PCA-502.07(Medical Treatment and Hospitalization of Prisoners)
- C. GO-RAR-901.07(Use of Force)
- D. GO-RAR-901.09(Use of Force Review Board)
- E. GO-RAR-901.11(Force-Related Duty Status Determination)
- F. SO-06-06(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Reportable Incident Form)
- G. SO-10-14(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Use of Force Incident Report)
- H. SO-12-18(Preliminary Reports)
- I. H.R.218 [Law Enforcement Officers Safety Act(Title 18 U.S. Code, Section 926)]